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 <개정 2015.7.20.>

회수의무이행계획서

※ EcoAS(www.ecoas.or.kr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개월
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의무대상 제품		회수 및 인계계획					
				위탁비용			
				회 수		인 계	
①제품군	②제품명	③회수방법	④인계방법	⑤수탁자	⑥지원 단가(원)	⑤수탁자	⑥지원 단가(원)

⑦회수·인계 의무이행 확인 방법	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 회수의무 대상 전기·전자제품의 회수·인계계획서 1부 2. 회수위탁계약서(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사본 1부 3. 수탁자의 폐전기·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,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	수수료 없 음

작성요령

①②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③ 직접 회수, 공제조합 가입, 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,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.
④ ③에 직접 회수로 작성한 경우, 수집소까지 인계하는 방법(자사 물류 차량 이용, 제조사 물류 차량 이용 등)을 적습니다.
*위탁비용란: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.
⑤ 회수 또는 인계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.
⑥ 회수 또는 인계 수탁자에게 회수 또는 인계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(㎏)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.
⑦ 회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(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)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계획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적정여부 확인)	→	결재	→	승인 통보
제출인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제출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